항목은 질병군 적용에서 제외하고 제 1편을 적용한다.
가. 혈우병환자, HIV감염자
나. 입원일수가 30일을 초과할 경우 31일째부터 발생하는 진료분
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서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라. 질병군 진료 이외의 목적으로 입원하여 입원일수가 6일을 초과한 시점에 예상치 못하게 질병군 수술이 이루어진 경우 입원일로부터 수술시행일 전일까지의 진료분

2.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가입자 등"이라한다)가 질병군으로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다음의 각

Q. 입원기간 중에 자격이 변동된 경우 또는 타법령(산재, 자보)으로 입원 중 질병군 대상 수술을 했을 경우 청구방법은?

는: 타법령으로 입원 중 질병군 진료가 발생한 경우 전체 진료내역을 행위별수가제로 청구함

☞ 급여 65720-1898호(2001.12.29)「타법령으로 입원진료 중 질병군 진료가 발생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 Q. 임신 유지목적으로 입원하여 입원일수가 6일을 초과한 시점에서 예상치 못하게 제왕절개분만이 이루어진 경우(초음파 산정방법)
  - 입원(행위별 청구) :(정상임신부) 7회까지 급여, 그 외 비급여 (태아의 이상이나 이상이 예측되는 경우) 급여
  - 제왕절개 시점 : <분리청구 시점>
     제왕절개분만 입원(DRG 청구) : 분만기간 초음파(비급여)
- Q. 임신 유지목적으로 입원하여 입원일수가 6일을 이내에 제왕절개분만이 이루어진 경우(초음파 산정방법)

제왕절개분만 입원(DRG 청구) : 분만기간 초음파(비급여)